

장 소 사 용 허 가 서				
①신청인	(대표자명)	②연 락 처		
③허가내용	④사 용 명			
	⑤사용일시	월 일 시 ~ 월 일 시	⑥행사시간	월 일 시 ~ 월 일 시
	⑦사용장소	⑧사용면적		
	⑨사용내용			
	⑩참여인원	명(출연자 명, 스텝 명)		
	⑪반입물품			
	⑫사 용 료	⑬입 장 료		
⑭허가조건	<p>1. 국가유산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저해하거나 훼손, 왜곡 하는 행위를 금하며 신청자(사업자)는 장소 사용 시 국가유산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함</p> <p>2. 신청자(사업자)는 장소사용 시 화재예방을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</p> <p>3. 신청자(사업자)는 장소사용 시 관람객의 관람에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안 됨</p> <p>4. 신청자(사업자)는 장소사용 시 질서 및 주변 청결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</p> <p>5. 장소사용 3일 전까지 해당 공능유적기관과 신청자(사업자)간 현장에서 업무협의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, 업무협의 시 다음사항을 필히 협의하여야 함</p> <p>가. 해당 공능유적기관을 피보험인으로 국가유산 보호와 관람객보호를 위한 보험에 가입하고, 장소사용 1일전까지 해당 공능유적기관으로 청약서 사본 1부를 제출</p> <p>나. 화재, 압사 등 사고발생을 대비하여 안전관리계획(안전요원배치도, 소방차 및 구급차 배치도 포함) 제출</p> <p>다. 안전요원은 장소사용 신청 시 면적, 위치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능유적기관과 협의하여 배치라. 관람객 관람 저해 등에 대한 안내판을 신청자(사업자)가 설치 및 철거(y형 배너)</p> <p>마. 우천, 폭설 등 기상악화 시 대책 제출</p> <p>바. 장소사용 허가 시부터 물품 철거 시까지 공능유적기관의 지시사항을 수행할 책임자를 1명 이상 지정</p> <p>6. 장소사용의 세부사항은 공능유적기관과 협의하고, 그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함</p> <p>7. 장소사용허가를 받은 후 해당 공능유적기관과 협의 없이 무단으로 장소사용을 하지 않거나 내용 등을 변경할 경우 향후 장소사용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.</p> <p>8. 허가조건 준수 등 확인·감독과 모니터링을 위하여 공능유적기관 관계자가 장소사용 시 동반할 수 있음</p> <p>9. 신청자(사업자)는 공능유적기관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협조하여야 함</p> <p>10. 반입 불가 품목</p> <p>가.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물품(담배,ライター, 가스통 등의 인화물질)</p> <p>나. 사적지의 품위를 손상케 하는 소품 및 시설</p> <p>다. 허가 받지 않은 차량과 소품용 차·우마차·마필 또는 기타 동물</p> <p>11. 장소사용을 위한 무대는 건물 등 시설물과 1m 이상 간격을 두어 설치하여야 하고 월대(月臺: 넓은 기단 형식의 대)와 박석(薄石: 평평한 돌) 위 설치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.</p> <p>12. 월대(月臺: 넓은 기단 형식의 대)와 박석(薄石: 평평한 돌) 등에 무대 등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할 때에는 국가유산 훼손 방지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공능유적기관의 검토 후 설치해야 한다.</p> <p>13. 장소사용을 위한 시설물의 디자인, 소재, 형태 등은 해당 유적의 품격을 저해하지 않아야 하며 공능유적기관과 사전 협의 후 설치해야 한다.</p> <p>가. 시설물은 전통 문양 등을 활용하여 주변 풍경과 어울리도록 디자인해야 함</p> <p>나. 시설물의 구조물 등은 재료를 노출하여서는 안 됨(무대, 조명탑, 음향부스 등에 풍경과 어울리게</p>			

장소사용허가서

디자인 한 가림막 설치 등)

다. 행사를 위한 천막(텐트)은 캐노피형을 사용해야 함(몽골텐트 금지)

14. 조명에서 발생하는 빛과 열은 단청 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시설물에 근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.
15. 조명 종류는 국가유산의 경관을 저해하여서는 안 된다.
16. 장소사용 관련 자재반입 및 반출은 관람시간 전 또는 후 시행하여야 한다.
17. 상기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「공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」 제36조에 따라 장소사용이 중지 또는 취소될 수 있음
18. 기타 장소사용 관련 시설물 설치 및 안전관리는 「공궐 활용사업 안전관리 매뉴얼」을 준용한다.

⑮기 타

「공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」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하니 허가 내용 및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공능유적본부장 (인)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²(재활용품)]